

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출처 :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



일본 정부, 201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 구체화

- 일본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1월 29일 책정하였으며, 에너지 관련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, 자원 및 에너지확보, 원전기술에 중점적으로 배분됨
 -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대부분이 정지 중인 상황에서 전력수급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, 에너지수입 증대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-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총 467억 엔으로 2012년 대비 약 2백가량 증가함.
 - 풍력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에 적합한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을 주요지역으로 정하고, 민간기업에 의한 송전망 정비에 새롭게 250억 엔을 배정함.
 - 또한, 지역발전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설립하고 이에 9억 엔을 계상함.
 - * 자민당은 정권공약에서 단기 최우선과제로 3년 동안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할 것을 내세웠음.
- 석유 및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대비 39% 증가한 733억 엔을 계상함.
 - 이 중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석유·천연가스 지분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를 통한 자금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2년 대비 68.2% 증가한 465억엔을 계상함.
 - 또한,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·천연가스 매장량 등 조사 시 소요되는 예산과 희소금속 조사사업 예산이 각각 16%와 39.2% 증가함.
- 원전 관련 예산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등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이 증액됨.

- 또한,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의 사전조사 비용을 위해 11억 엔, 고속증식로 몬주의 기술을 활용한 신형로 개발에 32억 엔을 각각 새롭게 계상함.

(MSN産経, 2013.1.29)

중국 신장, '15년까지 전력 미공급문제 해결

- 중국 국가전력망공사(國家電網公司)가 2013년에 신장 자치구 전력 미공급지역 17만 명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1월 25일 밝힘.
 - 2010년 말 기준, 신장자치구에는 27만 5,400가구의 107만 5,000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으며, 2011~2012년 국가전력망공사는 13억 6,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8만 6,000가구 35만 명의 전력 미공급문제를 해결하였음.
- 신장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10월 '신장 전력 미공급지역의 전력망 건설방안'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지역 내의 모든 전력 미공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바 있음.
 - 국가전력망공사는 27만 5,400가구의 88%인 24만 5,000가구(95만 명)는 전력망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력망 확장공사를 통해 이 지역 주민의 전력 미공급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.
 - 한편, 3만 가구의 12만 5,000명은 전력망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여, 전력망 확장공사를 통한 전력공급이 힘들기 때문에, 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독립 발전원을 건설하여 전력 미공급문제를 해결할 계획임.

(國家能源網, 2013.2.1)



중국, 2013년 전력부문 시장화개혁 추진

- 중국 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2013년 전력부문 시장화개혁의 주요 세가지 방안에 대해 2월4일 밝힘.
- 첫째, 대규모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,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. 또한, 시장 진입기준과 거래규칙을 명확히 하여 '직접전력거래제'를 체계화할 예정임.
- 둘째, 석탄 이중가격제도를 취소하고 발전용 석탄의 공급량·가격 및 발전기업의 비용변화에 대해 자세한 예측·분석을 진행할 계획임.
- * 석탄 이중가격제도란 석탄가격을 발전용 석탄가격과 시장 석탄가격으로 나누어 책정하는 것임. 일반석탄 가격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책정되지만, 발전용 석탄 가격은 1년에 한번씩 발전기업과 석탄기업이 협상을 통해 책정하되, 시장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됨.
- 셋째, '전력법'을 수정하고, '전력감독관리법'을 제정하는 등 송배전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.

[新華網, 2013.2.5]

프랑스, 심야 비주거용 건물 소등 의무화

- 프랑스 정부는 모든 비주거용 건물의 심야시간대 소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1월 30일 발표함.
- 프랑스 정부는 작년 8월 이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으며, 9월 20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올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함.

- 법안에 따르면, 7월 1일부터 프랑스 내 상점이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들의 실내조명은 모든 직원의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하며, 실외조명은 오전 1시~7시까지 의무 소등시간으로 정해짐. 단,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역 행사나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.
- 프랑스 Delphine Batho 환경·지속가능개발·에너지부 장관은 비주거용 건물 의무소등 법안을 통해 연간 2TWh의 전력 절약과 온실가스 25만 톤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,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광공해를 줄이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힘.
- EU 내에서 소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프랑스에 앞서 슬로베니아, 이탈리아가 있음.
- 슬로베니아는 2007년 9월 22일부터 안전·신호 등의 목적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요행사 기간을 제외하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소등을 의무화하는법이 시행되고 있음.
- 이탈리아도 2000년 Lombardia 지역을 시작으로 15개 행정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의무소등제를 실시하고 있음.

[ENDS Europe; Reuters, 2013.1.30]